

돈화문국악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

의안 번호	8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10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돈화문국악당은 정재(궁중무용), 정악(궁중음악) 중심의 국악 전문공연장으로
- 나.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며,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 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요
- 시설명 : 돈화문국악당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2-2 외 6(부지면적 845.6 m^2)
 - 시설규모 : 지하 3층 / 지상 1층(연면적 1,778.98 m^2)
 - 공간구성 : 공연장, 사무실, 연습실, 분장실 등
- 나. 주요 위탁내용
- 위탁기간 : 준공일로부터 3년

○ 위탁업무

- 돈화문국악당의 인력 및 시설물 관리 전반
- 홍보, 마케팅,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
-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등

○ 소요예산 : 연간 약 1,333백만원

○ 수탁기관 : 세종문화회관(세종문화회관 3년 위탁운영 후
공개모집 절차로 운영단체 선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1항, 3항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,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의 내용) 3호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16년도부터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이형복(☎2133 -2556)